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95782(본소), 2021나95799(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문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50022(본소),

2021가단50039(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439,759원 및 그 중 8,154,232원에 대하여는 2018. 5. 1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변제한 금원의 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